

9. 200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 사 보 고 서

가. 운영위원회

200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 사 보 고 서

2003 . 12 . 10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운 영 위 원 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3년 11월 21일 · 종로구청장
- 나. 회부일자 : 2003년 11월 21일
- 다. 상정일자 : 제137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2003. 12. 10) 상정 ·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의회사무국장 조성린)

가. 제안이유

- 2004년도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예산(안)을 편성하여
- 지방자치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거 구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세입예산액 : 해당없음
- 세출예산액 : 1,908,886천원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 (생략)

(보고자 : 전문위원 백철순)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 론 요 지 : 없음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나. 시민행정위원회

200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 사 보 고 서

2003 . 12 . 11.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

시 민 행 정 위 원 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3년 11월 21일 · 종로구청장 원안 제출

나. 회부일자 : 2003년 11월 24일 원안 회부

다. 상정일자 : 제137회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 정례회

제1차~제3차 시민행정위원회(2003.12.8~12.10) 행정관리국, 생활복지국, 보건서 및
감사담당관 예산(안)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행정관리국장 박 병 하, 생활복지국장 박 종 인, 보건소장 김 윤 수,
감사담당관 박 기 용)

가. 제안이유

- 2004 예산은 안전문화 정착에 역점을 두고 도시 기반시설의 기능강화 및 동청사 신축, 행정정보
화 기반구축, 청소분야에 집중 투자하고, 공과금 및 인건비 인상분, 보조사업비 부담분 등 법정
필수경비 확보와 아울러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문화종로 건설 기여사업에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단위 : 천원)

회 계 별	2004 예산	2003 예산		비교 증감율(%)	
		당 초	최 종	당 초	최 종
합 계	182,830,502	161,528,175	210,670,732	21,302,327 (13.2)	-27,840,230 (-13.1)
일반회계	149,847,546	132,311,430	180,648,761	17,536,116 (13.3)	-30,801,215 (-17.1)
특별회계	32,982,956	29,216,745	30,021,971	3,766,211 (12.9)	2,960,985 (9.9)
의료급여	27,750	76,000	80,337	-48,250 (-63.5)	-52,587 (-65.5)
주 차 장	32,955,206	29,140,754	29,941,634	3,814,461 (13.1)	3,013,572 (10.1)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보고자 : 전문위원 김 충 식) — 생 략

4. 질의 및 답변 요지 (생 략)

5. 토 론 요 지

- 김 성 배 의원의 수정안 동의
 - 일반회계 세입부문 : 원안가결
 - 일반회계 세출부문 : 수정동의
 - 특별회계 세입부문 : 원안가결
 - 특별회계 세출부문 : 원안가결

6. 수 정 안 의 요 지

- 2004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내역 : 별 첨
(총 예산규모는 당초 예산안과 변동 없음)

가. 일반회계

○ 세출예산

- 감액 : 통반장 지역신문 등 26건 1,142,400천원
- 증액 : 직원자료실 도서구입비 등 10건 78,050천원
- 신규 : 상용인부 격려품 등 18건 1,064,350천원

나. 특별회계 : 변동사항 없음

7.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함)

다. 재무건설위원회

200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 사 보 고 서

2003 . 12 . 10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3년 11월 21일 · 종로구청장

나. 회부일자 : 2003년 11월 24일

다. 상정일자 : 제137회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 정례회

제1차~3차 재무건설위원회(2003. 12. 8~12.10) 재무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예산
(안)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 2004년도 재정여건은 개별공시지가의 인상으로 종합토지세는 대폭 증가되었으나, 사업소세물 제외한 구세 수입의 증가는 미미하며, 의존재원인 조정교부금도 소폭 증가되었고, 세출 측면에서는 인건비 인상, 제세공과금 인상, 보조사업 부담비 가중 등 경직성 경비의 증가로 신규투자 물 위한 가용재원이 크게 부족한 상태이므로 꼭 필요한 분야에만 재원을 투입하는 실용예산을 기조로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편성

나. 주요골자

- 총예산 : 182,830,502천원(전년당초대비 13.2%증액)

┌ 일반회계 : 149,847,546천원

└ 특별회계 : 32,982,956천원(의료급여 : 27,750천원, 주차장 : 32,955,206천원)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보고자 : 전문위원 정성수)

□ 총예산규모

(단위:천원)

회 계 별	2004 예산(안)	2003년도 예산		증 감 율	
		당초예산	최종예산	당초대비	최종대비
합 계	182,830,502	161,528,175	210,670,732	21,302,327 (13.2%)	△27,840,230 (△13.2)
일반회계	149,847,546	132,311,430	180,648,761	17,536,116 (13.3%)	△30,801,215 (△17.1%)
특별회계	소 계	32,982,956	29,216,745	3,766,211 (12.9%)	2,960,985 (9.9%)
	의료급여	27,750	76,000	△48,250 (△63.5%)	△52,587 (△65.5%)
	주 차 장	32,955,206	29,140,745	3,814,461 (13.1%)	3,013,572 (10.1%)

□ 연도별 일반회계(최종예산) 대비 조정교부금 교부 현황

(단위:백만원)

구 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당초)
총 예 산	135,395	135,700	138,320	180,648	149,847
조정교부금	33,524	27,104	25,558	56,993	28,626
비 율 (%)	24.8	20.0	18.5	31.5	19.1

<회계별 재원 및 사업별 예산 현황>

□ 일반회계

(단위:백만원)

년도별	세 입			세 출				
	계	자체재원	의존재원	계	경상비	투자사업비	채무상환	예비비등
2004 (구성비)	149,847 (100%)	102,241 (68.2%)	47,606 (31.8%)	149,847 (100%)	91,966 (61.4%)	53,169 (35.5%)	107 (0.1%)	4,603 (3.1%)
2003(당초) (구성비)	132,311 (100%)	93,116 (70.4%)	39,194 (29.6%)	132,311 (100%)	84,086 (63.6%)	44,415 (33.6%)	1,606 (1.2%)	2,202 (1.7%)

※ 재정자립도 68.2%(2003년도 70.4%)

□ 특별회계

(단위:백만원)

구 분	년도별	세 입			세 출			
		계	자체재원	의존재원	계	경상비	투자사업비	기 타
의료 급여	2004 (구성비)	27 (100%)	9 (33.3%)	18 (66.6%)	27 (100%)	0	19,9 (71.9%)	7,8 (28.1%)
	2003 (구성비)	76 (100%)	64 (84.2%)	12 (15.8%)	76 (100%)	0	76 (100%)	0
주차장	2004 (구성비)	32,955 (100%)	30,643 (93%)	2,311 (7%)	32,955 (100%)	3,623 (11%)	22,822 (69.3%)	6,509 (19.8%)
	2003 (구성비)	29,140 (100%)	29,070 (99.7%)	70 (0.24%)	29,140 (100%)	3,612 (12.4%)	14,097 (48.4%)	11,430 (39.2%)

<지방채 현황 및 상환계획>

□ 지방채 내용

차입선	채무액	이 율	차입년도	상환조건	사용용도
서울시 재정투융자기금	40억	년4.25% (변동금리)	1998	2년거치 3년균분	구민회관·보건소 통합청사 건립비
재정경제부 재정융자특별회계	50억	년3.58% (변동금리)	1999	5년거치 10년균분	와룡동 93번지 외 4 도로개설 공사비

□ 상환실적 및 향후계획

(단위:백만원)

차입선	기상환액	2003 상환			2004 상환계획			상환잔액 (원금)	상환완료 예정년도
		계	원금	이자	계	원금	이자		
계	4,667	1,371	1,333	38	107		107	3,000	
서울시 재정투융자기금	2,667	1,497	1,333	164	0		0	0	2003년 12월
재정경제부 재정융자특별 회계	2,000	126		126	107		107	3,000	2014년

※ 재정부상환잔액 30억 원은 2009년부터 2014년까지 5년간 균등상환 예정임

<구유재산현황>

(단위:㎡)

년도별	계		행정자산		보존재산		잡종재산	
	토지	건물	토지	건물	토지	건물	토지	건물
2003년도말	7,757	230	7,020	225	.	.	737	5
2002년도말	5,913	161	5,163	156	.	.	750	5

<직종별 정원표 및 전년도 정원과의 대비>

(단위:명)

직종별	기관별	합 계			구 청			구의회			보건소			동		
직급별	년도별	2003	2002	증감	2003	2002	증감	2003	2002	증감	2003	2002	증감	2003	2002	증감
합 계		1,280	1,280	0	1,023	1,023	0	24	24	0	71	71	0	162	162	0
일반직	소계	876	876	0	646	646	0	18	18	0	50	50	0	162	162	0
	2급	1	1	0	1	1	0									
	3급	1	1	0	1	1	0									
	4급	7	7	0	5	5	0	1	1	0	1	1	0			
	5급	47	47	0	23	23	0	2	2	0	3	3	0	19	19	0
	6급	150	150	0	118	118	0	2	2	0	11	11	0	19	19	0
	7~9급	670	670	0	498	498	0	13	13	0	35	35	0	124	124	0
기능직	7~10급	283	283	0	262	262	0	6	6	0	15	15	0			
고용직	1종	91	91	0	91	91	0									
계약직	가~마급	9	9	0	3	3	0				6	6	0			
청원경찰		21	21	0	21	21	0									

<기금운용 현황>

(단위:천원)

번호	기금명	기금규모 (예산액)	관 리 형 태				
			적립금 (다음년도 이월분)	융자금	출연금	사업비	기타
1	재산관리 기금운용	424,315	374,315	50,000			
2	신청사건립 기금운용	7,143,500	7,143,500				
3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용	882,503	582,503	300,000			
4	노인복지기금운용	237,435	237,435				
5	여성발전기금운용	86,762	86,762				
6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	1,692,126	821,050	771,076	100,000		
7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기금운용	181,025	31,025	150,000			
8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운용	282,175	232,175			50,000	
9	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	4,053,383	2,018,383			2,000,000	35,000
10	재해대책기금운용	1,268,698	1,168,698			100,000	
11	식품진흥기금운용	2,165,494	36,494	2,000,000		126,500	2,500

4. 검토의견

일반회계

<세입>

- ☐ 일반회계 세입은 전년대비 총175억 3,611만 6,000원이 증가되었는 바 이를 재원별로 살펴보면 자체 재원에서는 지방세 수입에서 114억 953만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에서는 22억 8,546만 6,000원이 감소하였으며, 의존재원에서는 조정교부금이 47억 911만 7,000원, 국고보조금 22억 907만 2,000원, 시비보조금 15억 3,928만 2,000원이 각각 증가하였고 재정보전금에서는 4,541만 9,000원이 감소하였음.
- ☐ 중요 증감요인을 재원별로 살펴보면 먼저 자체재원인 지방세수입에서는 개별공시지가 상승 및 종합토지세 적용율 인상 등으로 종합토지세에서 96억 9천여 만원, 최근 5년간 평균 신장률을 적용하여 산출한 결과 사업소세에서 16억8천여 만원의 세수증대가 각각 예상되고 세외수입에서는 동대문

상가 건물부지 신규대부계약이 2003년부터 대폭 증가되어 재산임대수입에서 1억 1,700만원의 수입 증대가 예상되는 반면에 순세계잉여금에서는 세입·세출 전망의 정확한 추계로 인하여 39억원과 도시가스기금 폐지에 따른 기금전입금에서 2억이 각각 감소하였음.

의존재원에서는 2002년도에 이어 2003년도에도 부동산 경기활성화 등으로 등록세·취득세가 대폭적으로 증가하였고 이로 인하여 조정교부금이 금년에도 47억여 원으로 증가하였으며, 국·시보 조금에서도 22억원과 15억 3,000만원이 각각 증가되었음.

○ 세입예산 주요증감내역

(단위:천원)

재 원 명	2004년 예산(안)	2003당초	증 감 율		사 유
			금 액	비율(%)	
종합토지세	36,158,900	26,468,430	9,690,470	36.6	개별공시지가 20.9%상승과 종토세 적용비율 3% 인상 예상으로 대폭 증가
사업소세	12,040,406	10,357,522	1,682,884	16.2	최근 5년간 평균 징수율과 신장률 적용 결과 증가
과년도수입	718,998	804,222	△85,224	△10.6	총체납액 감소
재산임대수입	353,686	236,321	117,365	49.7	2003년도부터 동대문상가 건물부지 신규대부계약 증가
사업수입	342,480	114,480	228,000	199.2	구청 및 보건소 주차장수입증가
공유재산 매각수입	700,000	300,000	400,000	133.3	신청사건립기금 조성 등 대규모 투자사업비 마련을 위한 매각대상 공유재산 증가
순세계잉여금	13,051,949	16,957,850	△3,905,901	△23.0	불용액 추계 및 세출·징수전망 정확화
기금전입금		200,000	△200,000	△100	도시가스기금 폐지
조정교부금	28,626,782	23,917,665	4,709,117	19.7	등록세·취득세 세수증가에 의한 증가
국고보조금	9,149,628	6,940,556	2,209,072	31.8	가내시액
시비보조금	8,826,064	7,286,782	1,539,282	21.1	"

<세 출>

-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은 전년대비 9.14%인 12억 7,539만원이 증가한 152억 2,342만 2,000원으로서 부서별로 주요 증감요인을 살펴보면 세무1관리에서 지방세 성실납부자 간담회 및 경품구매 신설 등 일반수용비 및 제세공과금 인상 등으로 32.2%인 8,170만원이 증가하였고 지적관리에서는 새주소포함 지번도 제작 및 새주소부여 전산시스템 유지비, 지번안내도 전산화일 구축 용역비 신설 등 새주소부여사업과 관련된 예산소요발생으로 27.4%인 7,482만 5,000원이 증가하였음.

도시계획에서는 돈화문로 지구단위계획 학술용역비 3억원과 인사동 골목길가꾸기사업 공사비 4억 3,550만원이 각각 편성되어 전년예산 대비 210%인 6억 582만 8,000원의 예산이 증가되었으며 전

축지도에서는 전년도에 창신2동 절개지 보강공사비 1억원이 편성된 바 있어 금회에 42.6%인 8,443만 5,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건설행정에서는 가로정비를 강화하기 위한 업무추진비 1,000만원 신설과 사유도로 중 소송패소에 대비한 도로미불보상금 1억원 신규편성 등으로 29.4%인 2억 1,034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 지방세 납부홍보 또는 구 주관행사 및 사업홍보용으로 각 과에서 구매 제침하는 플렉카드는 우리 구청의 경우 연간 100여 매가 제작 구매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구입가격이 1매당 7만원으로 편성한 부서가 있는가 하면 11만원으로 편성한 부서가 있는 등 부서별로 구매단가가 상이하하여 예산 심사의 혼란과 함께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될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됨. 최근 컴퓨터 실사 출력 플렉카드 제작방식이 개발되어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가 가능한 종류도 있으니 주관과에서는 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종류별로 단가계약체결 등으로 필요부서에서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물품을 구입하고 통일된 단가에 의하여 예산편성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됨
- 420P 재산회계관리예산 중 물품관리용 바코스크너 구입비로 1,800만원이 편성되었는 바 이는 물품관리를 정확하고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 15개의 바코스크너를 구입 3~4개 부서를 묶어 관리할 계획인 것으로 이해되나 현재 우리 구 직제를 보면 1개 국에 4~5개의 과가 편제되어 있으므로 보다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국단위로 묶어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여 이로 인하여 바코스크너 구매예산도 절약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되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422P 세무1관리 예산 중 지방세 성실납세자 경품구입비로 1,200만원이 편성되었는 바 경품지급대상자 파악이 되지 않아 1인당 경품비용은 알 수 없으나 지방세 납부는 국민의 4대 의무의 하나로 소득과 재산보유정도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는 것으로 이해됨으로써 과다한 경품지급은 오히려 성실납세자에게 본인인 납부한 세금이 불필요하게 쓰여진다는 인식을 줄 수도 있고 소득과 재산이 많지 않아 경품지급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은 대다수의 주민들에게는 소외감을 줄 수 있으므로 경품은 약소하게 하고 구청장 표창장 수여 등으로 모범 주민으로서의 자긍심을 심어주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
- 448P 주택기획예산 중 재건축관련 및 노후불량주택 안전진단평가 예산으로 평가요원 1인당 14만원의 수당이 산출 편성되었는 바 이는 서울시에서 운영하던 안전진단평가단을 최근 현장조사 등 확인업무의 대행 수수료지급은 자치구 고유사무라는 이유로 동업무가 자치구로 환원됨에 따라 서울시에서 지급하던 수당을 그대로 적용한 것으로 이의 근거로는 건설교통부 고시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 제14조와 우리 구에서 방침으로 정한 바에 의한다고는 하나 453P 및 455P의 위험시설물 안전진단평가 예산은 15만원으로 편성되는 등 부서마다 특수진단 인력에 대한 대가수당 지급금액이 상이하고, 방침서에도 “참석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어 수당지급 금액이 애매하므로 이에 대한 통일된 수당지급 방침이 수립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됨
- 457P 지적관리 일반운영비 예산 중 새주소포함지번도 제작비 2,000만원과 새주소안내지도 제작비 1,000만원이 각각 편성되었는 바 이는 우리 구 새주소추진사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주민들에게 새주소이용을 안내 홍보하기 위한 사업비로 판단되나 두 가지 사업 모두가 주민홍보용으로 제작되는 것이며 지번도는 주소 위주로, 안내도는 도로 위주로 제작하는 것이므로 이를 통합하여도 별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검토가 필요
- 465P 건설행정 일반운영비 중 기본사무용품비로 76만원이 편성되었는 바 직원 1인당 사무용품비 20만원은 과다한 것으로 사료되므로 검토 필요

□ 471P 건설행정예산 중 도로미불보상금 1억원이 신규로 편성되었는 바 이는 우리 구 관내 사유도로 중 보상청구에 따른 소송제기에 대비하여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보이나 최근의 토지가격과 사유도로 소유자의 보상청구 증가추세를 감안하여 볼 때 턱없이 부족하여 전시성 및 비효율적인 예산편성이라는 지적이 우려되므로 이를 현실성있게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함으로 검토가 필요함

□ 481P 도로건설예산 중 보도육교 정밀안전진단용역비로 1억원이 책정되었는 바 이는 관내육교 중 위험하다고 육안으로 판단되는 5개소에 대한 안전진단비로서 1개소당 2,0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임. 전년도에는 5개소에 대한 관내 보도육교 안전진단비로 육교 1개소당 1,000만원씩 총 5,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부결된 바 있으므로 예산의 과다책정 등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나 시설물에 대한 안전진단 등은 건설기술관리법에 근거하고, 인건비 등은 건설교통부 고시 99-419호의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대가(비용산정) 기준 등을 적용하여 예산을 산출하고는 있으나 이의 필요성 여부 등의 판단은 고도의 전문지식을 요하고 용역비 산출에 있어서도 직접 인건비 외에 제경비, 기술료, 위험수당, 기계기구손료, 제잡비 등 직접경비와 실측도면작성, 지질조사 및 탐사, 가설재의 설치 및 해체 등 추가조사비 산출 등 비전문가로서는 산출하기가 극히 어려우며 의원님들 또한 전문가가 아닌 이상 마찬가지인 것으로 사료됨.

육교 1개소 안전진단에 소요되는 예산 2,000만원은 과다한 것으로 사료되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진단의 필요성 여부와 용역비 산출의 적정성 여부 등은 비전문가로서는 판단하기 곤란한 것이나 2004년도 용역비 예산은 총 7건에 6억 9,000만원에 달하고 있어 이를 간파하기에도 어려운 실정임. 따라서 이와 같은 용역비 등에 대한 심사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그 방안으로서 현재 집행부에 용역심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으나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으므로 심사위원을 명실상부한 전문인사로 재정비 위촉하고 참석위원 수당 또한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여 일정액 이상의 용역비는 반드시 심사를 받되 심사를 받지 않은 용역비는 예산편성에 제외하는 등 적극적인 방안이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481P 도로건설 시설비 및 부대비 예산 중 사직·중앙지하보도 보수공사비로 1억 9,000만원이 편성되었는 바 도로시설물은 관할구청에서 관리한다고는 하나 전년도 예산심의 시에 동십자각 지하보도 리모델링 공사비 4억 5,000만원을 시설물이 중요도로에 위치해 있어 종로구민도 이용하지만 서울의 모든 시민이 더 많이 이용한다는 것을 이유로 부결시킨 사례가 있어 말씀드리니 심사에 참고하시기 바람

특별회계

< 세 입 >

□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은 전년대비 12.9%인 37억 6,621만 1,000원이 증가된 규모이며 이를 재원별로 살펴보면 자체 재원인 세외수입에서 순세제잉여금 2억 9,515만 9,000원, 부설주차장 설치비용부담금 8억원, 과년도 불법 주차 과태료 3억 3,857만 8,000원 등 총 15억 7,321만 1,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의존재원에서는 그린파크 2006지구조성 지원금으로 22억 4,125만원의 시보조금이 증가되었음

< 세 출 >

□ 509P 교통관리예산 중 거주자우선주차장 안내 표지판 교체예산으로 7,000만원이 편성되었는 바 이는 낡고 노후된 거주자우선주차장 안내표지판을 교체하는 것으로서 개당 단가가 70만원의 고가이므

로 전체 안내판 341개의 30%인 100개를 일제히 교체하는 것은 보다는 너무 노후화 되어 교체가 불가피한 안내판 중에서 선별하여 10% 정도인 30~40개만 우선 교체 후 타 재질과의 장단점 비교 후 점진적으로 교체하는 것이 사업추진의 효율성 제고와 함께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등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됨으로 검토가 필요함

- ☐ 513P 주차장건설예산 중 그린파킹 2006, 3개소 시범지구 조성사업비로 30억원이 편성되었는 바 이는 시비에서 21억을 보조하고 우리 구 자체예산 9억원이 포함된 예산임. 이 또한 3개소를 동시에 추진하기보다는 우선 1개 지구를 선정하여 투자하고 사업추진 등을 분석한 후 장단점 분석 등을 통하여 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대상지를 선정 년차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되므로 검토가 필요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 론 요 지

- 조 기 태 위원의 수정안 동의
 - 일반회계 세입부문 : 원안가결
 - 일반회계 세출부문 : 수정가결
 - 특별회계 세입부문 : 원안가결
 - 특별회계 세출부문 : 수정가결

6. 수정안의 요지 : 따로붙임

- 예산과목별 축조심사
- 주요골자
 - 중 액 : 4,096,910천원 (일반회계 3,566,000천원, 특별회계 530,910천원)
 - 감 액 : 4,096,910천원 (일반회계 3,566,000천원, 특별회계 530,910천원)

【일반회계 세출】

- ☐ 중 액 : 도로유지보수공사비 외 19건 3,566,000천원
- ☐ 감 액 : 자재창고 이전설치 외 27건 3,566,000천원

【특별회계 세출】

- ☐ 중 액 : 불법주정차감시용 무인카메라 외 2건 530,910천원
- ☐ 감 액 : 거주자우선주차장 안내표지판 교체 외 1건 530,910천원

7. 심 사 결 과

- 일반회계 : 축조심사결과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기타(안)은 원안가결
- 특별회계 : 축조심사결과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기타(안)은 원안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